

関税業務에 관한 개선案 確定

—輸出入業界 建議事項에 대한 措置—

- ◇…本회는 지난 2月 20日字에 일선 輸出業체의 업무를 원활히 하…◇
- ◇…기 위해 関稅庁 소관 業務에 관해 적절한 개선을 요하는 事項을…◇
- ◇…建議한바 있는데 이번에 関稅庁으로부터 그 결과가 나왔다. …◇
- ◇…당초 본회는 22件을 건의했는데, 이중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12…◇
- ◇…件(○)이며, 현행 제도의 활용이 7件(△), 건의가 부결된 것이…◇
- ◇…3件(×)으로 나타났다. (괄호안의 부호는 本文에 표시하여 알…◇
- ◇…기 쉽게 하기 위함.) …◇
- ◇…다음에 그 내용 全文을 소개한다. 各業체 실무자의 業務에 活用…◇
- ◇…하기 바란다. …◇

I. 建議事項

□ 輸出通關業務

件名	建議內容	措置內容
1. 海外加工·修理를 목적으로 搬出하는 境遇의 通關節次 簡素化(△)	国内에서 修理가 不可能한 物品을 海外에서 修理·加工하기 위하여 搬出할 때 国内 修理不可能證明書 提出을 요구하나 同證明書 發給機關이 없으므로 通關時 마찰을 야기함으로 国内修理 不可能證明書 提出省略 要望.	物品의 修理·加工을 外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稅關長의 認定하는 경우에는 無換輸出이 可能하며 海外修理 타당성은 技術的인 側面에서의 事由만 提示하면 通關이 可能하고 別途로 国内修理不可能 證明書의 提出은 要하지 아니함. (参照: 貿易去來法施行令 第45條 19號)

□ 輸入通關業務

件名	建議內容	措置內容
1. 輸入通關殘量證明書 發給의 簡素化(○)	輸入通關殘量證明發給時 通關地 稅關을 明記하고 前回の 通關殘量證明 添附書類一切을 첨부케 함으로서 業務處理의 頻雜	輸入通關殘量證明發給時 用途는 稅關業關用으로 記載하여 申請하면 特定稅關을 指定하지 아니하여도 發給이 可能하며 輸入通關殘量證明書에는 輸入許可書 寫本 1部만 첨부하면 殘量證明發給이 可能토록 함.
2. 無換受託加工 貿易 資材通關(○)	輸入되는 資材의 送狀에 原資材名 과 單價金額이 詳細히 表示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所要量 證明書로서 補充資料를 認定하여 通關要望.	品名과 資材別 價格이 包括적으로 記載된 경우에는 L/C 開設時 첨부한 Offer Sheet를 첨부하여 輸入資材의 物品別 內譯을 確認할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認定通關토록 함.

□ 指定稅關制度

件名	建議內容	措置內容
1. 指定稅關制度 事後評價 追徵告知(△)	指定稅關 登錄業체에서 CCCN分類 相異 事後評價 等으로 追徵할때 納付期限을 告知日로부터 20日 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徵收猶豫期間까지 納付할 수 있도록 改善要望.	輸出用原資材에 대한 CCCN 相異 事後評價로 인한 課稅價格 變動이 있어 追加告知하는 경우 追加稅額에 대하여도 既免許된 輸出用原資材 諸稅 徵收猶豫期間까지 徵收猶豫할 수 있음. (참조: 還給特例法 第5條)

□ 見品通關業務

件名	建議內容	措置內容
1. 輸出物品 見本類의 通關(○)	電子製品의 TV3臺 等과 같이 輸出物品의 見本通關 許容수량이 制限되고 있는바 이를 改善하여 金額別 通關限度 制度로 전환 要望.	우리나라 商品의 輸出促進을 위하여 搬出하는 輸出商品見品類는 稅關長이 반출사유가 타당하다고 認定하는 경우 에는 物品別 수량에 拘애됨이 없이 合理的인 수량에 대하여 輸出을 許容하도록 措置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2. 輸入商品 見本類 通關時 眞正化 作業(○)	商品見本類 通關時 眞正化 作業을 省略하고 課稅 通關하고 있는데 一定期間 事後管理하는 條件으로 免稅處理 要望.	商品見本으로 認定되는 見品에 대하여는 眞正化 作業을 하지 아니하고 免稅處理하도록 措置.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3. 見本輸入通關(○)	美國에서 送付되는 見本에 대하여 送狀을 提示받아 通關을 하는데 見本은 送狀이 없으므로 過去 輸入한 免狀으로 通關可能하도록 措置要望.	見品은 送品狀을 提示하지 아니하여도 通關이 가능한 것이나 物品의 確認에 필요한 카타로그, 價格資料, 從前의 輸入免狀 等を 提示하면 通關의 迅速을 期할 수 있음.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4. 電子機械部分 品 通關(○)	部分品 見品 搬出時 數量過多라는 理由로 通關不許하는 事例가 있는바 輸出免狀 및 該當모델의 所要量을 첨부할 경우 輸出免許토록 要望.	輸出商品 見品類는 稅關長이 搬出사유가 타당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物品別 수량에 拘애됨이 없이 合理的인 數量에 대하여 輸出을 許容하도록 措置. (참조: 訓令 제82-217호, 82. 5. 12)

□ 還給關係業務

件名	建議內容	措置內容
1. 輸入免狀의 有効期間(○)	內國信用狀 또는 購買承認書 等에 의한 多段階供給으로 輸出하는 경우는 現行 輸入免狀有効期間 1年 6月을 2年으로 改正 要望.	輸入免狀有効期間 1年 6月은 対応輸出履行期間으로서는 充分하다고 認定되나 多段階 加工 內國輸出品中 長期間을 要하는 品目이 있으면 調査하여 檢討後 措置할 것임.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2. 還給申請機關擴大(△)	輸出通關稅關(出張所) 및 그 管轄稅關에서도 還給申請할 수 있도록 措置要望	現行制度上 輸出通關稅關 및 管轄稅關에서 還給申請이 可能함.
3. 內需用輸入免狀에 대한 還給申請機關(×)	內需用으로 輸出用原材料로 使用하였을 경우, 內需用輸入免狀에 대한 關稅還給을 韓國外換銀行에서도 可能토록 改善 要望.	內需用輸入免狀을 輸出等에 供하고 還給申請하는 경우에는 그 使用事由를 確認하여 過多還給與否를 糾明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還給業務 및 通關業務를 專門적으로 取扱하는 稅關에서 糾明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外換銀行에서의 還給은 困難하고, 還給申請稅關을 全國稅關으로 擴大하였음. (參照: 告示 第82-294號, 82. 4. 1)
4.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	違約物品 등의 關稅還給時 關稅等 納付領收證을 要求하고 있는바 이는 業務의 繁雜만을 招來하므로 改善 要望.	關稅還給申請時 關稅等 納付領收證을 提出할 必要가 없으므로 이의 是正을 還給機關에 施達하였음. (參照: 還給1274. 4-762號, 82. 3. 25)
5. 電子製品에 대한 所要量告示(○)	所要原材料別, 規格別로 所要量을 告示하여 還給業務가 過多하게 되므로 規格을 無視한 所要原材料別로 所要量을 告示하고 이에 따라 關稅還給 要望.	所要量告示를 簡素化하도록 工業振興 庁長에게 要請하였음. (參照: 還給1274. 4-556號, 82. 3. 25)
6. 駐韓美軍販賣物品 還給機關 및 還給申請(○)	還給機關: “納品地管轄機關”에서 “供給者管轄稅關”으로 改定 要望. 還給申請: “軍納業者”에서 “完製品로 賣供給者”로 改正 要望.	完製品供給者에게 還給申請權은 賦與하였으며 住所地 管轄機關에서도 還給申請이 可能하도록 還給機關을 擴大 措置하였음. (參照: 告示 第82-294號, 82. 4. 1)
7. 一括還給申請(還特法施行令第9條의 2)(×)	同一輸出免狀에 CCCN(8單位)이 相異한 輸出品이 同時 通關되는 경우 CCCN(8單位)이 相異한 物品은 輸出免狀을 分割하여 還給申請할 수 있도록 許容 要望.	輸出免狀을 分割하여 還給申請하는 경우에는 所要原資材에 대한 輸入免狀도 分割하게 되므로 一括還給申請하는 것보다 還給業務가 오히려 繁雜하게 됨.
8. 法定處理日數(還特法施行에 관한 事務處理要領 第17條)(○)	電子製品의 경우는 輸出品目 1種目일 경우 7日 輸出品目 1種目 追加時 1日追加	還給處理期間을 短縮調整하고, 概算額支給 要件을 緩和措置하여 概算額支給制度를 積極活用하도록 改善하였음. (參照: 告示 第82-294號, 82. 4. 1)
9. 部品로 賣業體의 還給申請(×)	部品로 賣供給業體에도 還給申請權 賦與 要望.	還給特例法上 關稅還給은 輸入原材料를 輸出에 供한 후에 申請하여야 하므로 輸出 履行前에 內國輸出者에게 還給하는 것은 法上 곤란함.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0. 定額還給節次 簡素化(○)	單一製品이지만 製品規格別로 還給計 算하여야 하는 現行制度를 改善하여 單一製品の 경우는 同一코드로 還給 申請할 수 있도록 措置要望. (例: Polyester Toilm Condenser)	同一코드番號로 一括還給申請하도록 措置하였음. (參照: 還給1274. 4 - 762號, 82. 3. 25 25)

□ 其他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 保稅工場의 物 品搬入申告와 檢 査(△)	保稅工場에 계속 反復的으로 搬入되 는 物品으로서 同一規格의 物品은 搬 入檢査는 書面 檢査로 하여 줄 것.	保稅工場에 계속 反復的으로 搬入하는 同種 同質의 物品으로서 監視 監督에 文障이 없는 物品은 書面 檢査함. (參照: 告示 第81-241號 第13條)
2. 積荷目録 訂正 (△)	積荷目録 訂正時에 I/L 및 L/C에 輸 入者의 名義가 表記되어 있는 경우에 도 法人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事例가 있는 바 이의 改善 要望.	積荷目録 訂正을 할 때 I/L 또는 L/ C에 輸入貨主가 明示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인감증명은 提出할 必要가 없는 것임.
3. 返送 節次(△)	通關保留된 物品을 返送 免許한 後 I TC 만 利用하여 保稅運送함으로서 적 기 船積이 困難함.	通關保留된 物品의 返送은 外國物品 狀態로 送付하는 것이므로 不正 流出 의 우려가 있어 保稅運送業者가 運送 하고 있으나 本人이 直接 運送하고자 하면 關稅의 擔保를 提供하고 稅關長 의 承認을 받아 運送할 수 있음. (參照: 告示 第80-226號)
4. 保稅運送制度 의 簡素化	保稅運送 免許時 船積書類 대신 保稅 運送 申告書와 積荷目録의 對照確認 만으로 指定 稅關 登錄業體는 保稅運 送 可能하도록 改善 要望	保稅運送을 申告하려면 輸入許可書, 送品狀, 包裝明細書 등을 添付하여야 하나 檢査省略, 擔保提供省略, 其他 稅關長이 認定하는 物品은 輸入許可 書 寫本만 提出하면 保稅運送을 許可 할 수 있음. (參照: 告示 第80-226號)

II. 稅關窓口에서 본 輸出通關 애로사항

• 一線稅關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 稅關 檢査職員 不足	輸出物量은 15%씩 增加하고 있으나 稅關 檢査職員은 限定되어있어 적기 檢査가 곤란함. 특히 輸出申告의 午後 集中으로 輸 出檢査가 지연됨.	① 輸出 申告人과 貨主에게 輸出申告 의 午後 集中으로 通關이 지연되고 있음을 弘報하여 輸出申告를 分散 하여 申告하도록 誘導할 것. ② 專門 鑑定要員 양성, 人員增員 등 으로 人力不足으로 인한 通關遲延 事例가 없도록 措置하겠음.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2. 輸出検査法에 의한 検査省略物品의 検査	輸出検査法에서 優秀業体の 生産品에 대하여 検査 省略하고 있는데 이러한 物品에 대하여는 税関検査를 省略 도록 改善要望.	輸出検査法에 의하여 検査가 省略되는 優良業体の 生産品에 대하여는 税関長이 輸出業体の 誠実도와 物品의 性狀을 把握하여 検査省略하도록 할 것. (参照: 総括1275-196號 '82. 5. 11)
3. 反復輸出物品 検査省略	1個月内 輸出実績이 있는 物品에 대한 検査省略 猶豫期間을 2個月로 延長 要望.	税関長이 輸出業体の 誠実도 物品의 性狀을 把握하여 検査省略하도록 할 것. (参照: 総括1275-969號 '82. 5. 11)
4. 書類 補完	船積期日이 緊急한 物品에 대한 輕微한 事項은 輸出 免許 後 事後補完할 수 있도록 措置 要望.	輸出 許可事項과 現品の 重量・規格 등이 相異할 때에는 税関長이 現品대로 訂正하여 輸出 免許하도록 措置 (参照: 例庫140-0-0-4號 '82. 5. 3)
5. 検査合格証 発給未備	輸出検査 合格証을 発給할 때 輸出許可書에 記載된 所要 原資材 내역의 記載가 누락됨으로서 輸出物品의 正確에 대한 審査業務에 隘路가 있음.	輸出検査証 發給을 할 때에는 輸出許可書에 記載된 所要原資材를 確認하여 検査証을 發給하도록 措置 (参照: 総括1275-709號 '82. 4. 5 檢行1341-4932號 '82. 5. 19 出日1312-2451號 '82. 6. 17)
6. 輸出許可書와 輸出検査証 訂正印 누락	輸出許可事項 및 輸出検査事項의 訂正을 할 때 訂正印이 누락되어 訂正事項의 正当性を 認定할 수 없음.	輸出許可書와 検査証을 訂正할 때에는 반드시 訂正印을 捺인하여 訂正事項의 正当性 確認에 錯誤없도록 措置 (参照: 総括1275-709號 '82. 4. 15 檢行1341-4932號 '82. 5. 19 出日1312-2451號 '82. 6. 17)
7. CCCN分類 相異時의 通関	輸出許可받은 品目は 輸出自動承認品目이나 現品 検査結果 輸出規制品目으로 CCCN이 分類될 때에는 輸出許可事項을 訂正한 후 通関함으로 處理가 지연되는 바 輸出物品은 品名, 規格이 許可事項과 一致하는 경우에는 通関 許容할 수 있도록 改善 要望.	輸出許可事項과 現品の CCCN이 相異할 경우 變更될 CCCN이 同一 推薦機関의 추천을 받은 物品일 때에는 税関長이 確認한 CCCN으로 輸出 免許하도록 措置 (参照: 例規140-0-0-4 '82. 5. 3)
8. 海外 工事用機資材 許可書發給	海外 工事用 機資材에 대한 搬出確認書를 海外 建設協會에서 税関에 送付함으로서 致着이 지연되어 輸出通関이 곤란함으로 業者가 持參할 수 있도록 改善 要望.	海外 工事用 機資材 搬出確認書는 建設業者에게 直接 交付하여 輸出申告하도록 改善 措置 (参照: 総括1275-1103號 '82. 4. 29 海建協第10467號 '82. 4. 21)
9. 輸出検査 合格証 發給遲延	輸出検査機関에서 検査 合格証 發給이 지연되어 輸出通関이 늦어짐으로서 適期 船積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輸出検査機関의 検査合格証 發給의 迅速이 要望됨.	輸出検査所에서는 輸出物品検査의 迅速을 期하기 위하여 夜間에도 検査現場에서 検査証을 發給하고 있으며 城南과 仁川地域에는 韓国衣類検査所를 下半期에 増設할 計劃임. (参照: 総括1275-709號 '82. 4. 10 출일1312-2451號 '82. 6. 17)

件 名	建 議 内 容	措 置 内 容
10. 水産物 輸出檢 査合格証	水産物 檢査 合格証에는 品名, 規格 만 記載함으로 輸出 許可받은 物品인 지의 確認이 곤란함.	水産物 輸出檢査機關에서 輸出物品에 輸出 許可番號 等を 記載하도록 協調 要請. (參照: 總括1275-709號 '82. 4. 10)
11. 輸出推薦書 確 認徹底	輸出推薦 對象物品을 推薦없이 輸出 許可함으로서 輸出通關審査에 混亂超 來	輸出許可機關인 外國換銀行에 輸出許 可時 該當推薦書 徵求를 徹底히 確認 하도록 注意 促求했음. (參照: 總括1275-709號 '82. 4. 10)
12. 輸出許可事項 相異	輸出許可된 事項과 輸出檢査받은 合 格証上의 品名, 規格이 相異된 경우 許可事項의 訂正으로 通關遲延.	輸出許可된 事項과 檢査合格証上의 重 量, 規格이 相異한 경우에는 稅關長 이 訂正하여 輸出 免許할 수 있도록 措置. (參照: 例規140-0-0-4, '82. 5. 3)
13. 輸出檢査 合格 証 早期發給	輸出物品의 製造完了 以前에 事前 發 給함으로서 窓口 마찰 發生	輸出檢査 合格証의 事前 早期發給 事 例가 없도록 輸出檢査機關에 協調 要 請하였음. (參照: 總括1275-709號 '82. 4. 10)
14. 輸出事項 記載 錯誤	輸出申告書의 記載事項 錯誤로 內容 訂正을 요하여 通關 遲延	關稅士會에 關稅士로 하여금 輸出入 申告書의 午後 集中申告와 申告書 作 成上의 오류를 防止할 수 있도록 主 意 促求 (參照: 總括1275-1298號 '82. 6. 25)
15. 現品의 重量未 達	現品의 重量이 通關許容 基準數量을 超過하여 輸出通關 遲延	現品의 重量이 未達하더라도 不正輸 出의 嫌疑가 없다면 稅關長이 現品대 로 通關을 許容하도록 措置. (參照: 例規140-0-0-4 '82. 5. 3)